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시험관리 지침

2016. 2. 23.

제1조(목적) 본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시험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68조 및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조치 등 시험관리의 공정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침에서는 인성교육, 시험감독관 선임, 시험문제 출제에서 시험지 배포, 시험시행, 그리고 시험 후 관리로 나누어 조치 절차를 정한다.

제3조(인성교육)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과대학 학생회는 매년 신학기 초에 공과대학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붙임1의『전북대학교 공대인의 다짐』준수 선서를 한다.
2. 각 학부(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전북대학교 상벌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침 및 붙임의 제반 사항을 학부(과) 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3.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초 첫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시험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시험감독관) 시험감독관 선임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전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장의 책임 하에 시험감독관을 선임하되, 교과목 담당교수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 시험장의 학생이 30명 이상인 경우 시험감독관은 2인 이상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교과목 담당교수 이외의 시험감독관은 교원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5조(시험문제 등) 시험문제 출제에서 배포까지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지는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사전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2. 시험지 복사 및 보관은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시험지는 복사 후 봉투에 넣어서 테이프로 밀봉하고 시험장에서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시행) 시험시행 과정의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시험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1.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시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2.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또는 시험감독관이 허용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학생 본인의 가방에 넣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감독관은 시험장 상황에 맞게 책상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자리를 재배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7조(부정행위 조치)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히 조치한다.

1.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부정행위가 사실인 경우 해당학생의 답안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한다.
3.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 관련사항을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4. 해당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는 부정행위 관련사항을 공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5. 공과대학장은 진상조사 후 공과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징계를 논의하고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제8조(답안지 보관) 담당교수는 시험시행 후 답안지를 5년간 보관한다.

제9조(신문고) 공과대학은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공과대학 교무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과대학『시험관리신문고』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6년도 제1차 공과대학 학부(과)장 회의 종료 후 시행한다.

【붙임 1】『전북대학교 공대인의 다짐』

1. **(학습)** 나는 창의적 사고와 전문지식을 갖춘 공학도가 되기 위하여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다.
2. **(윤리와 자긍심)** 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인재가 되기 위하여 시험, 과제, 연구 등 학업수행 과정에서 대학과 나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며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3. **(대인관계)** 나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4.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나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지하고 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붙임 2】『전북대학교 학생 상벌규율과 상벌제도』 안내

■ 전북대학교 학생은 「**전북대학교 학칙**」 및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포상**할 수 있다.
- ▸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처분**한다.

□ 관련규정

○ **전북대학교 학칙**
- 제95조(포상), 제96조(징계사유 및 절차) 또는 제97조(징계의 종류)

○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
- 제7조(상벌조정위원회) 또는 제20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 세부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또는 장학금 지급)**할 수 있다
-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할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학생
-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학생
-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학생
-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학생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

○ **(시험부정행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처분한다
- 대리시험 행위 또는 시험 답안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입하는 행위
- 시험 답안지의 교환, 답안지 투입 또는 답안지의 유통 행위
- 문제지 사전 유출 및 유통 행위 (신설 예정)

☞ **무기정학 또는 제적** 처분, **당해학기 전과목성적 0점**처리, 당해학기 장학금 회수
-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신설예정)
-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변경예정)

☞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 **당해과목 0점**처리, 당해학기 장학금 회수